

# 사가정 센트럴 IPARK

##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안내문

### 1. 공급내역

- 공급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64-10번지 일원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지하2층, 지상30층 /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
- 공급세대 : 총 1,505세대 중 일반분양 1,029세대 (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95세대 포함)
- 연면적 : 244,724.51㎡

#### ● 특별공급 대상세대 (기관추천)

| 주택형   | 공급면적(㎡) | 전용면적(㎡) | 일반공급세대 | 특별공급 (기관추천)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59A   | 87.376  | 59.780  | 100    | 10          |    |
| 59B   | 88.406  | 59.920  | 45     | 4           |    |
| 84A   | 112.262 | 84.870  | 487    | 48          |    |
| 84A1  | 112.262 | 84.870  | 26     | 2           |    |
| 84A2  | 112.262 | 84.870  | 31     | 3           |    |
| 84B   | 113.178 | 84.956  | 286    | 28          |    |
| 114A  | 143.010 | 114.853 | 25     | -           |    |
| 114A1 | 143.010 | 114.853 | 3      | -           |    |
| 114B  | 144.021 | 114.931 | 26     | -           |    |
| 계     |         |         | 1,029  | 95          |    |

※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.

### 2.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방법

#### ●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.장소

| 구 분         |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| 장 소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특별공급 신청     | 2017. 10. 24 (화) (10:00~14:00) (예정) | 2017. 11.8(수)~10(금)<br>(예정) | 당사<br>견본주택 |
|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| 2017. 10. 25 (수) (예정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

□ 신청방법 -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 (모델하우스)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.

#### ※ 당첨자 선정(공고)유의사항

- ◆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.
- ◆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, 동.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.(동·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)
- ◆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.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 (전산관리지정기관)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.호수 배정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 합니다.)

## ●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### □ 신청자격

◆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) 또는 “청약 조정대상지역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

◆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17년 10월 19일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(이주대책 대상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북한이탈주민 등)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◆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년 10월 19일 예정)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 (철거민, 유공자, 장애인 제외)

- ▷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▷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▷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(2017년 10월 19일 예정)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### □ 유의사항

◆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신청자 및 그 세대원(부부포함)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,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)

◆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.  
(단,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◆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(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.  
(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제2조 제4호)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◆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.

◆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,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.

◆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.

◆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
◆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.(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◆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,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
◆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

◆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17년 10월 19일 예정) 현재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일 경우 주택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해당 최하층을 우선 배정됨. 최하층 우선배정시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가 경쟁이 발생할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에 우선 배정함. [단,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(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]

◆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.  
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◆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.

## ● 특별공급 구비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| 서류유형 |     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| 발급 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| 필수   | 추가 (해당자)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
| 공통서류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    |      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감증명서              | 본인    |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|       |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증              | 본인    | 또는 운전면허증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| 본인   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| 본인   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.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○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| 배우자   |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  |
| 기관추천 (일반) 특별공급   | ○    |          | 청약통장순위 (가입)확인서     | 본인    |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(단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| 본인    |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|
|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| ○    |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| 본인    | 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감증명서              | 청약자   |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| 청약자   |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위임장                | 청약자  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증              | 대리인   |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|
|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장                 | 대리인   |  |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년 10월 19일 예정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 (단,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.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● M/H위치 및 기타문의



- 시행 : 면목3주택재건축경비사업조합 / 시공 :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

-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: <http://www.i-park.com/sagajeong/>

- 모델하우스 및 현장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64-10번지 일원 / 분양문의 : (02) 433-0066

□ 투시도 및 조감도



\*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□ 단위세대 (확장형)

59A



59B



\*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□ 단위세대 (확장형)

84A.A1,A2



84B



\*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□ 광역위치도



\*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